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여성보육과

제정 2021·11· 5 조례 제1770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공중화장실 등"이란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.
- 2. "민간화장실"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 제1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.
- 3. "불법촬영"이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.
- 4. "불법촬영기기"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이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주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불법 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) ① 시장은 주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체 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 - 1.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
 - 2.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대여
- 3. 그 밖에 시장이 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(특별 관리 대상 지정)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공

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

중화장실 등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.

- **제6조(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)** ① 시장은 민간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.
- 제7조(신고체계의 마련)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.
- 제8조(실태조사)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- 제9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- 제10조(교육 등) ① 시장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수 있다.
 -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설명서를 작성・배포할 수 있다.
- 제11조(위탁관리 등)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「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라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- 제12조(홍보)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·보급하는 등 효율 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